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지 (공통)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실시하고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법의 개정 방향 수립 및 개정안 마련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지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 특수교육법 주요 분야별 개정 방향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배경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항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생각을 담담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의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귀하의 답변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통계법 제33조 준수). 바쁘시더라도 빠뜨리는 문항 없이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기룡 올림(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조사 관련 문의: 조경미 연구원(s-education2020@naver.com)
- 조사 기간: 2020년 7월 16일 ~ 7월 31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로 실시

| | | | | | | | | | |
|----|--|--|--|--|--|--|--|--|--|
| 지역 | | | | | | | | | |
| ID | | | | | | | | | |

I. 법률 개정 방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순 | 문항 | 평정척도 | | | | |
|----|---|-------|----|----|---------|------------|
| | | 매우 적절 | 적절 | 보통 | 적절하지 않음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 1 |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2 | 통합교육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3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확대 배치 근거, 교육과정 운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4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5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확대 등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6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권 보장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7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보호자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8 | 시·도 특수교육원 설치, 특수교육 지원 조직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9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대상 확대 및 벌칙 조항 강화 등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10 |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11 | 특수교육 현장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정 | | | | | |
| 12 | 법의 적용 대상을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조항을 타 법률(고등교육법 등)로 이관) | | | | | |
| 13 | 위에서 제시한 개정 방향 이외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개정 방향이 있다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개정 방향: _____ | | | | | |

※ 위에서 제시한 12가지 개정 방향 중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개정 방향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해 주십시오.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작성 예) 1순위: 12번, 2순위: 10번, 3순위: 1번

II. 법률 개정 방안

※ 특수교육법 각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순 | 관련 조항 | 문항 | 응답 항목 | 비고 |
|---|------------------|---|--|----------|
| 1 | 특수교육 목적 (제1조) | 특수교육의 목적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목적 그대로 사용 →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기본법 제18조와 같이 특수교육의 실행 주체, 제도, 운영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술 →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현행 법률 제1조에 제시된 법률의 목적을 시대 변화 및 현장 요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 | 특수교육 용어 (제2조) |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규정 →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라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을 교육과정 지원 중심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개별적 서비스로 규정 ③ 특수교육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양한 서비스 혹은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3 | 특수교육대상자 용어 (제2조) |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명칭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특수교육대상자” 그대로 ②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을 뜻하는 “특수교육요구학생”으로 변경 ③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뜻하는 “특별지원요구학생”으로 변경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4 | 차별금지 (제4조) | 현재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특수교육법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선다형 (택1) |

| | | | | |
|---|---------------------------|--|---|-------------|
| | |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 특수교육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금지 대상 규정 확대 ③ 현행 유지 ④ 기타_____ | |
| 5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규정 신설 | 장애인권교육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규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에 이와 관련된 교 육 실시 규정 제시 ②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특수교육법에 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③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6 | 사립 특수교육기 관 (제6조) | 현행 법률에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적절할 경우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위탁취 소 조항 추가 ② 현행대로 위탁취소 조항을 추가하지 않음 ③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7 | 사립 특수교육기 관 (제6조)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기 지 도·감독 실시 규정 추가 ②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비정기 지도·감독 실시 규정 추가 ③ 현행대로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음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8 | 교원의 자질 향상 (제8조) | 현행 법률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관련 교육 및 연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규정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수교육교원 대상 일반교육 교육과정 분야 ②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분야 ③ 일반교육교원 대상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분야 ④ 예비 특수교육교원 대상 일반교육 교육과정 분야 ⑤ 예비 일반교육교원 대상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분 야 ⑥ 기타 _____ | 선다형 (중복) |
| 9 | 보호자 지원 (제19조)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보호자의 특수 교육대상 학생 양육 역량 및 가정 내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등을 위한 규정 ② 개별화교육계획 등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정보 제공 규정 ③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보호자의 학교 운영 참여 관련 규정 ④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등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구 또는 지원 부서(인력) 설치·운영 규정 ⑤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추가 등 보호자의 권 | 선다형 (중복) |

| | | | | |
|----|--------------------------|--|---|----------|
| | | | <p>리 보호 관련 규정</p> <p>⑥ 특수학급 신·증설,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p> <p>⑦ 기타_____</p> | |
| 10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제10조) |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p>① 현행 기능(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학교 배치 심사 및 심사청구 기능) 외에 지역의 특수교육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확대 재편</p> <p>② 현행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학교 배치 심사와 심사청구 업무 중심으로 운영</p> <p>③ 기타_____</p> | 선다형 (택1) |
| 11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제10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현재 기능 및 미래의 기대되는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① 특수교육위원회로 변경</p> <p>② 특수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p> <p>③ 기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유지</p> <p>④ 기타_____</p> | 선다형 (택1) |
| 12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p>① 법률에 시설·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p> <p>② 법률에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p> <p>③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농·산·어촌 지역 등)에 대한 센터 추가 설치 규정 명시</p> <p>④ 현행 유지</p> <p>⑤ 기타_____</p> | 선다형 (중복) |
| 1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범위 (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① 현행 10개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유지</p> <p>② 현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폐지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특수교육요구 아동 혹은 특별지원요구 아동)에 대한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p> <p>③ 기타_____</p> | 선다형 (택1) |
| 14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범위 (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p>① 난독증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포함</p> <p>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등 현행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장애유형까지 확대</p> <p>③ 정신장애, 난독증 등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을 최대한 포함</p> <p>④ 기타_____</p> | 선다형 (택1) |
| 15 |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제19조) |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규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p>①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규정 삭제</p> <p>② 현행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교육 요건 기준 상향 조정</p> <p>③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규정 마련</p> <p>④ 현행 유지</p> <p>⑤ 기타_____</p> | 선다형 (택1) |
| 16 | 교육과정 고시 범위 (제20조) | 영아 또는 전공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 <p>① (무상교육 과정인) 영아 및 (전환교육 과정인) 전공과 교육과정 모두 교육부장관이 고시</p> | 선다형 (택1) |

| | | | | |
|----|--|--|---|-------------|
| | |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영아 교육과정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고, 전공과 교육과정은 현행대로 유지 ③ 전공과 교육과정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고, 영아 교육과정은 현행대로 유지 ④ 현행 유지(학교장이 편성하여 교육감 승인 후 운영) ⑤ 기타_____ | |
| 17 | 교육과정 고시 방법 (제20조) | 특수교육 교육과정(공동 및 선택) 고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통합 고시 ②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통합 고시하되,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도 별도로 고시 ③ 현행대로 일반교육과정과 별도로 고시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18 | 교육과정 운영 방법 (제20조) |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교육과정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일반교사 의무적 참여 규정 신설 ③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의 책무 규정 추가 ④ 현행대로 각급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⑤ 기타_____ | 선다형 (중복) |
| 19 | 기본 교육과정 성격 (제20조)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이수하는 학습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3R(읽기, 쓰기, 셈하기)과 생활기능 영역을 절충한 교육과정으로 함 ②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이수하는 생활 기능 영역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함 ③ 현행 유지(초중등교육과정의 이수가 어려운 중도지적장애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0 | 기본교육과 정 운영 근거 규정 방법 (제20조)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기본교육과정의 성격과 교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 ② 기본교육과정의 성격 또는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 ③ 기본교육과정의 성격 및 교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1 | 교육과정 평가 관련 규정 (제20조) | 대안평가 등 구체적인 특수교육 평가방법을 법률에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2 |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운영 (신설) | 특정 분야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지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특수학교를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 | | | |
|----|------------------------|--|--|----------|
| | |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23 | 통합교육 운영 (제21조) | 현재 통합교육계획에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 학습보조기기, 교원연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규정 ② 통합학급 담당 일반교사의 업무 경감 규정 ③ 통합학급 담당 일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정 ④ 일반교사의 책무성 강화 규정 ⑤ 일반학교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규정 ⑥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체제 구축 규정 ⑦ 모든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규정 ⑧ 초·중등교육법의 통합교육 실시 규정에 통합교육 지원 관련 내용 추가하는 규정 ⑨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 ⑩ 기타_____ | 선다형 (중복) |
| 24 | 개별화교육 계획 목적 (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특수교육교육과정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의 유형, 범위, 내용 및 담당자 등을 명시한 '교육지원계획' 문서로 규정 ②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평가 등이 명시된 '교육과정 운영계획' 문서로 규정 ③ 현행 유지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5 | 개별화교육 계획 명칭 (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 변경 ② '개별화' 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 변경 ③ 현행 명칭 '개별화교육계획' 유지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6 |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범위 (제22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참여 방안으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등학교 과정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참여 ② 중학교 과정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참여 ③ 학교과정과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④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27 | 진로 및 직업교육 명칭 (제23조) | 진로 및 직업교육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진로 및 직업교육) ② 직업교육 ③ 진로교육 ④ 전환교육 ⑤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 | | | |
|----|-----------------------|---|---|----------|
| 28 | 전공과 운영 장소 (제24조) | 지역사회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과 설치·운영 장소를 확대한다면 어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② 장애인복지시설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④ 현행 유지(특수교육기관) ⑤ 기타_____ | 선다형 (중복) |
| 29 |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학생수 (제27조)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별 학급 설치 기준으로 적절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___명 당 1학급 ② 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___명 당 1학급 ③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___명당 1학급 ④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___명당 1학급 | 가입형 |
| 30 | 특수교사 배치 기준 (제27조) | 현행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대로 규정 ② 학교형태별 또는 학교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 규정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 규정 ④ 일반 초·중등학교 교사 배치 기준과 같이,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 ⑤ 기타 () | 선다형 (택1) |
| 31 | 특수교사 배치 기준 (제27조) | 현행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당 1명입니다. 만약 개정한다면 특수교사 1명당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대로 4명 ② 3명 ③ 2명 ④ 1명 ⑤ 기타_____ | 선다형 (택1) |
| 32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제27조) | 특수교사 배치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1명당 가중치는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수교육대상자 2명으로 간주 ② 특수교육대상자 3명으로 간주 ③ 특수교육대상자 4명으로 간주 ④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⑤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3 | 치료지원 (제28조) | 치료지원 영역을 변경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적 지원*에 해당되는 영역 중심으로 재편 ②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재편 ③ 현행(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유지 ④ 기타_____ <p>* 의료적 지원: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지원으로 의료 기사법 등 의료적 지원 담당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p> <p>**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재활, 심리재활, 행동재활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치료지원 영역을 관련 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p> | 선다형 (택1) |

| | | | | |
|----|---------------------------------|--|---|-------------|
| 34 | 보조인력 (제28조) | 보조인력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률에 규정하여 운영 ② 시행령에 규정하여 운영 ③ 시도교육감 지침으로 운영 ④ 현행대로 각급학교의 장이 운영 ⑤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5 | 방과후학교 지원 (신설) | 방과후학교 운영 또는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6 | 건강관리 등 의료적 지원 (신설) | 경관영양섭식, 뇌전증 발작 시 관리, 도뇨관 배뇨, 석션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건강관리 지원(의료적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7 | 행동지원 관련 조항 (신설)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8 | 의사소통 지원 관련 조항 (신설) | 보완대체의사소통, 몸짓상징(언어) 등 대안적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③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39 | 장애대학생 지원 (제29조 ~ 제32조) | 대학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시 ②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 ③ 별도의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④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40 | 벌칙 (제38조 및 제38조의 2) | 특수교육법의 벌칙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입학거부, 차별행위 등)보다 벌칙 부과 범위 확대 ② 현행보다 벌칙 부과 범위 축소 ③ 현행(벌칙 부과 대상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벌칙 부과 수준 강화 ④ 현행보다 벌칙 부과 수준 약화 ⑤ 현행보다 벌칙 부과 범위 및 벌칙 부과 수준 강화 ⑥ 현행보다 벌칙 부과 범위 및 벌칙 부과 수준 약화 ⑦ 기타: _____ | 선다형 (택1) |

| | | | | | | | |
|----|--------------------------------------|---|--|----|-----|--------|-------------|
| 41 | 벌칙 (제38조 및 제38조의 2) | 벌칙 부과 범위를 개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입학거부, 차별행위 등)보다 그 범위를 확대 ② 현행보다 그 범위를 축소 ③ 현행대로 ④ 기타 _____ | | | | 선다형 (택1) |
| 42 | 벌칙 (제38조 및 제38조의 2) | 벌칙 부과 수준을 개정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벌칙 부과 대상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벌칙부과 수준 강화 ② 현행보다 벌칙부과 수준 약화 ③ 현행대로 ④ 기타 _____ | | | | 선다형 (택1) |
| 43 | 신규 특수교육 지원 기관 설립 관련 (신설) |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 수준의 특수교육 지원 기관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규 설립 제안 기관 | 필요 | 불필요 | 잘 모르겠음 | 체크 리스트 |
| | | | 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 | | | | |
| | | | 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단·평가, 교수·학습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등 다량의 특수교육 정보(빅데이터 포함)를 수집·분석하고, 교사·학부모 등에게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특수교육정보관리지원센터 | | | | |
| | | | ③ 특수교육대상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 | | | |
| | | | ④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장애대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 | | | | |

※ 위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 방안 이외에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관련 조항 | 개정 사항(주요 개정 방향, 개정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 |
|-------|-----------------------------------|
| | |

III. 배경 정보

※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기입하시거나 체크해 주십시오.

(교원 및 교육전문직)

| |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일반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전문직 <input type="checkbox"/> ④ 학교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 | |
| 성 | <input type="checkbox"/> ① 남 | | | <input type="checkbox"/> ② 여 | | |
| 연령대 |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 |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 |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이상 | |
| 특수교육 경력 | 특수교육 교육경력 _____년 | | | | | |
| 근무 학교(기관) |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 | <input type="checkbox"/> ③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 |
| | <input type="checkbox"/> ④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 근무 학교(기관)의 설립 형태 | <input type="checkbox"/> ① 국립 | |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 | |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 | |
| | <input type="checkbox"/> ① 영아과정 | |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 |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 |
| 담당 학교과정 또는 업무 |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⑥ 전공과 | | <input type="checkbox"/> ⑦ 교육행정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 |
| |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 | |
| 근무 학교(기관)의 소재 지역 |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
| |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
| |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 <input type="checkbox"/> ⑮ 제주 | <input type="checkbox"/> ⑯ 경북 | <input type="checkbox"/> ⑰ 경남 | |
| 근무 학교(기관) 소재 지역의 특성 |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② 도시·농촌 복합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③ 농·산·어촌 지역 | |

(학부모)

| | | | | | | | |
|-------------------------------|--------------------------------------|--------------------------------------|--|--|------------------------------------|--|--------------------------------|
| 부모 | 성 | <input type="checkbox"/> ① 남 | | | <input type="checkbox"/> ② 여 | | |
| | 연령대 |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 |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 |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이상 | |
| | 거주 지역 |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
|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 |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 |
|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 |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 <input type="checkbox"/> ⑮ 제주 | <input type="checkbox"/> ⑯ 경북 | <input type="checkbox"/> ⑰ 경남 | | |
| 자녀 | 성 | <input type="checkbox"/> ① 남 | | | <input type="checkbox"/> ② 여 | | |
| | 배치 학교 형태 |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 | <input type="checkbox"/> ③ 일반학교 특수학급 | |
| | | <input type="checkbox"/> ④ 일반학교 일반학급 |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
| | 학교의 설립 형태 | <input type="checkbox"/> ① 국립 | |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 | |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 | |
| | 학교소재지역의 특성 |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② 도시·농촌 복합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③ 농·산·어촌 지역 | |
| | 학교 과정 | <input type="checkbox"/> ① 영아 |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⑥ 전공과 |
| | 장애유형 (주장애) | <input type="checkbox"/> ① 시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② 청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③ 지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④ 지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⑤ 정서·행동장애 | |
| | | <input type="checkbox"/> ⑥ 자폐성장애 | <input type="checkbox"/> ⑦ 의사소통장애 | <input type="checkbox"/> ⑧ 학습장애 | <input type="checkbox"/> ⑨ 건강장애 | <input type="checkbox"/> ⑩ 발달지체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장애정도 | <input type="checkbox"/> ① 경도(3급~6급) | | <input type="checkbox"/> ② 중등도 또는 중도(2급) | | <input type="checkbox"/> ③ 최중도(1급) | | |
| 중복장애 유무 | <input type="checkbox"/> ① 중복장애 | | | <input type="checkbox"/> ② 중복장애 아님 | | | |

(연구자용)

| |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① 대학 교수 | <input type="checkbox"/> ② 대학원생 | <input type="checkbox"/> ③ 연구원 |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 |
| 성 | <input type="checkbox"/> ① 남 | | | <input type="checkbox"/> ② 여 | | |
| 연령대 |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 |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 |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이상 |
| 특수교육 경력 | 특수교육 교육·연구 경력 _____년 | | | | | |
| 근무 기관의 소재 지역 |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
| |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
| |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 <input type="checkbox"/> ⑮ 제주 | <input type="checkbox"/> ⑯ 경북 | <input type="checkbox"/> ⑰ 경남 | |

<끝>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